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      |
|----------|------|
| 의안<br>번호 | 1464 |
|----------|------|

제출년월일 : 2010년 11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제안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87(2010.10.5) 및 충청북도 세정과-13049(2010.10.5)호에 의거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 조치.
-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2010.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

### 3. 주요내용

- '11.1.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10.12.31. 일몰적용으로 '11년 감면조례 제정시 까지 감면 공백 발생
    - \* '11년부터는 조례 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지방세심의 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11년 시행으로 사전심의 불가
-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 보완조치로 감면기한을 '11.12.31.까지만 한시적용하고, '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
- 시세 감면조례 37개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5개 조항이 이관되고 17개 조항이 변경되어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 3. 의안전문 : 붙임

### 4. 기타참고 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나. 입법예고기간 : 2010. 9. 28 ~2010 . 10 . 28 (20일간)

다. 제 11 회 조례 · 규칙심의회 심의 · 의결 결과 : 원안가결

5. 관계법령 : 붙임

- 첨 부 1. 의안전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관계법령 1부.  
4.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서 사본 1부.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제천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각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궐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12월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4. 이륜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

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

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 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14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6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천시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금 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금 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 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보 척

제1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제천시 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lt;개정 2008. 1. 4&gt;</p>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제천시 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
|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br/>           ① 생략<br/>           ② 생략</p>   | <p>&lt;삭제&gt; 지특법 제29조 이관<br/>           &lt;삭제&gt; 지특법 제17조 이관</p>   |
| <p>제3조(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등급 1급 내지 3급(시각장애인의 경우는 4급)인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 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lt;개정 2008.12.26&gt;</p> <p>1.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br/>           가. 배기량 2,000cc 이하인 승용자동차<br/>           나.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를 제외한다)<br/>           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 <p>제2조(시각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br/>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 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p> <p>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br/>           가. 배기량 2천cc 이하인 승용자동차<br/>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br/>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p> |

|   |   |
|---|---|
| <p>2. 승차정원 15인 이하인 승합자동차<br/>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br/>     4. 이륜자동차</p> <p>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부터 매매의 알선을 위하여 제시한 사실이 증명되는 자동차. 다만, 제시한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동차폐차영업소에서 폐차 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p> <p>4.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p>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p> <p>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br/>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br/>     4. 이륜자동차</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p> <p>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이 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p> <p>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p> <p>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p> <p>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p> |
| <p>제4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lt;개정 2009.12.31&gt;</p>   | <p>제5조(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p>   |
| <p>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
| <p>제6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br/>생략</p>  | <p>&lt;삭제&gt; 지특법 제20조 이관</p>   |
| <p>제7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lt;개정 2009.12.31, 2010.2.12&gt;</p>   | <p>제4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p>   |

|   |  |
|---|--|
| 제8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44조 이관   |
| 제9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42조 이관   |
| 제10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한다. <개정 2008. 1. 4><br>1. 「문화재보호법」 제5조, 제7조 내지 제9조와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개정 2008. 1. 4><br>2.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사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br>3. 「문화재보호법」 및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br>②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08. 1. 4> | 제6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
| 제10조의1(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br>생략  | * 지특법 제55조 일부 이관   |
|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14조 이관   |
|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16조 이관   |
| 제13조(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br>「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 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당해 날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괴밀억제권역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2009.12.31>                         | 제8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날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제13조의2(아파트형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 제9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  |

업종의 협동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 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역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8.12.26>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당해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동법 제28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과세대상으로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신설 2008.12.26>

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5조(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18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생략

제18조의2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제7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조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삭제> 감면일률, 전방조종차량 감면조항 지특법 제67조 이관

<삭제> 지방세법 부칙 개정 예정

|   |  |
|---|--|
| 생략  |  |
| 제19조(사관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84조 이관   |
| 제20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83조 이관   |
| 제21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 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 4. 2009.12.31. 2010.2.12> | 제10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2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동법 제17조제1호부터 7호 까지 규정에 의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8.12.26, 2009.12.31, 2010.2.12>  | 제12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충북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충북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
| 제23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충청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개정 2009.12.31, 2010.2.12>   | 제11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
| 제2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



|  |  |
|--|--|
| 제28조(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79조 이관   |
| 제29조(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br>생략   | <삭제> 지특법 제81조 이관   |
| 제30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br>「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br>벤처기업이 동법 제18조의4의 규정에 의한 벤<br>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당해 사업을 영위<br>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날<br>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5년간<br>재산세를 면제한다.  |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br>「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br>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br>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br>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br>는 날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br>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 제32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br>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br>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br>제한다.  | 제16조(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br>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br>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br>면제한다.   |
| 제32조의2(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천시<br>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br>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br>「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br>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br>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br>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br>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br>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br>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br>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br>포함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br>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br>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br>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이상<br>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br>를 추징한다.<본조신설 2010.9.24> | 제17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제천시 내에<br>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br>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br>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br>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고용보<br>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br>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br>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br>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br>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br>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br>부동산을 포함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br>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br>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br>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br>창출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br>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
| 보 칙  | 보 칙  |
| 제33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br>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br>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br>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이<br>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br>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br>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
| 제34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br>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br>직접사용의 범위에는 당해 법인의 고유 업<br>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br>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제18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br>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br>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br>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br>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제34조의1(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br>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 제19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br>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부   |

|   |   |
|---|---|
|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 신설 2009.12.31>   | 돌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
| <p>제35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lt;개정 2009.12.31&gt;</p> <p>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2009.12.31&gt;</p> | <p>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제36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 제3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2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
| 제3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 관계법령

### 지방세법 [일부개정 2009.6.9 법률 9780호]

-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다.
- 제8조 (수익등 사유로 인한 불균일과세 및 일부과세)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 특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대하여서는 불균일과세를 하거나 또는 그의 일부에 대하여서만 과세할 수 있다.
-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78.12.6, 1998.12.31, 2008.2.29>

- 함께하는 충북 -



## 충청북도



수신자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87(2010. 10. 5)호의 이첩입니다.
2.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자율제정제도 시행에 앞서, 금년 말로 감면 시한이 종료되는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일몰을 1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에 따라 현행 감면조례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사항 및 세목변경 사항 등을 반영한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불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모든 자치단체에서는 필요한 감면에 한하여 금년 말 까지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2011.1.1일부터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10년말 종료 감면조례 한시 연장 방안 1부.  
 2. '11년 감면조례 표준안 1부.  
 3. '11년 감면조례 표준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감면조례안 의견조회 결과 1부. 끝.

##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세정과장), 충주시장(세정과장), 청천시장(세정과장), 청원군수(재무과장), 보은군수(재무과장), 익천군수(재무과장), 영동군수(재무과장), 증평군수(재무과장), 진천군수(재무과장), 괴산군수(재무과장), 음성군수(재무과장), 단양군수(재무과장)

주무관

세정팀장

세정과장

협조자

시행 세정과-13049 ( 2010.10.05. ) 접수 세정과-17161 ( 2010.10.05. )

우 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문화동) / <http://www.cb21.net/>

전화 220-2753 / 전송 043-220-2759 / [wiseyumi@korea.kr](mailto:wiseyumi@korea.kr) / 공개

## '10년말 종료 감면조례 한시 연장 방안

### □ 추진 배경

- 현재 자치단체 감면조례는 행안부장관의 사전허가(표준조례 또는 개별조례)를 받아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운영 중임
  - 지방세법 분법 추진 관계로 모든 감면조례의 일몰시한을 '10.12.31로 단축(3년→1년) 시행함
- '11.1.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10.12.31. 일몰적용으로 '11년 감면조례 제정\*시까지 감면 공백 발생 예상
    - \* '11년부터는 조례 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지방 세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11년 시행으로 사전심의 불가
-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 보완조치 필요

### □ 대상 감면조례 현황

- 표준조례 17개
  - 지방의료원, 미분양주택, 지방공사, 아파트형공장 등
- 개별조례 414건
  - 도시가스사업, 문화지구, 도시형공장, 고용창출기업 등

### □ 감면공백 보완방안

- 현행 감면조례에 한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얻은 것으로 간주, '10년 말까지 조례를 개정하되,

- 감면내용을 확대할 수 없고, 감면기한도 '11.12.31.까지만 한시 적용하고, '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토록 조치

참 고

## 지방세 감면조례 운영 현황

### 〈 표준 감면 조례 〉

| 지특법 이관 (20개)         |                       |
|----------------------|-----------------------|
| ①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29)   | ②국가유공자 등 소유자동차(§17)   |
| ③장애인 소유자동차(§17)      | ④노인복지시설(§20)          |
| ⑤평생교육시설(§44)         | ⑥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42)    |
| ⑦농협중앙회(§14)          | ⑧운송사업지원(§70)          |
| ⑨수출용 중고차 등(§68)      | ⑩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차(§67) |
| ⑪임대주택(§31)           | ⑫주택재개발(§74)           |
| ⑬농어촌주택개량(§16)        | ⑭주거환경개선사업(§74)        |
| ⑮시장정비사업(§83)         | ⑯사권제한토지(§84)          |
| ⑰지방이전 공공기관 이주직원(§81) | ⑱공공기관 지방이전(§81)       |
| ⑲법인 등의 지방이전(§79)     | ⑳화물→승용 분류 자동차(지방세법)   |
| 자율 운영 대상 (17개)       |                       |
| ①문화재(§55외 조례에 따른 감면) | ②주택(§33외 미분양주택)       |
| ③한센정착농원              | ④종교단체의 의료업            |
| ⑤지방의료원               | ⑥지방공사                 |
| ⑦아파트형 공장             | ⑧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 ⑨신용보증재단              | ⑩외국인투자유치              |
| ⑪농공단지 대체입주           | ⑫산업단지                 |
| ⑬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 ⑭기업도시                 |
| ⑮지역특산품생산단지           | ⑯관광단지 투자촉진            |
| ⑰시각장애인(4급) 소유자동차     |                       |

## 〈 개별 감면 조례 〉

| 구 분    |        | 감 면 대 상  |
|--------|--------|--|
| 서<br>울 | 광역(8)  | ①도시형공장 ②도시정비사업 ③문화지구 ④균형발전촉진지구<br>⑤승용차요일제 ⑥공연장 ⑦고용창출기업 ⑧재산세 감면 준용  |
|        | 기초(93) | ①도시정비사업 ②관광호텔 ③시장정비 ④전직대통령 ⑤우면산                                    |
| 부<br>산 | 광역(9)  | ①항만공사 ②한국거래소 ③센텀시티 ④승용차요일제 ⑤경륜공<br>단 ⑥문현금융단지 ⑦선박투자회사 ⑧고용창출기업 ⑨관광단지 |
|        | 기초(36) | ①항만공사 ②센텀시티 ③해제된 GB  |
| 대<br>구 | 광역(4)  | ①산격지구 ②승용차요일제 ③향토기업 ④고용창출기업  |
|        | 기초(20) | ①향토기업 ②고용창출기업 ③해제된 GB ④산격지구 등                                      |
| 인<br>천 | 광역(4)  | ①도서지역 ②테크노파크 ③국제공항 ④항만공사   |
|        | 기초(8)  | ①항만공사 ②테크노파크 ③해제된 GB ④토지구획정리사업                                     |
| 광<br>주 | 광역(5)  | ①테크노파크 ②광기술원 ③디자인센터 ④고용창출기업 ⑤아<br>시아문화중심도시                         |
|        | 기초(12) | ①테크노파크 ②광기술원 ③디자인센터 ④첨단과학산단  |
| 대<br>전 | 광역(2)  | ①대덕특구 ②고용창출기업  |
|        | 기초(2)  | ①대덕특구  |
| 울<br>산 | 광역(1)  | ①항만공사  |
|        | 기초(5)  | ①항만공사  |
| 경<br>기 | 광역(5)  | ①도서지역 ②도시형공장 ③특1급호텔 ④문화지구 ⑤장흥특구                                    |
|        | 기초(59) | ①해제된 GB ②도시형공장 ③특1급호텔 ④문화지구 등                                      |
| 강<br>원 | 광역(4)  | ①도시가스 ②테크노파크 ③고용창출기업 ④북평산단   |
|        | 기초(40) | ①도시가스 ②테크노파크 ③폐광진흥지구 ④북평산단   |
| 충<br>북 | 광역(3)  | ①도시가스 ②공공기관이전 ③고용창출기업  |
|        | 기초(20) | ①도시가스 ②고용창출기업  |
| 충<br>남 | 광역(1)  | ①도서지역  |
|        | 기초(1)  | ①보령명천 택지개발예정지구   |
| 전<br>북 | 광역(5)  | ①도서지역 ②생물산업진흥원 ③내장산리조트 ④고창석정온천<br>⑤고용창출기업                          |
|        | 기초(17) | ①생물산업진흥원 ②내장산리조트 ③고창석정온천 ④고용창출<br>기업                               |
| 전      | 광역(4)  | ①도서지역 ②광양컨테이너배후지 ③테크노파크 ④여수박람회                                     |

| 구 분    |        | 감 면 대 상  |
|--------|--------|--|
| 남      | 기초(3)  | ①해남화원관광단지 ②광양컨테이너배후지 ③여수박람회                              |
| 경<br>북 | 광역(4)  | ①도시가스 ②고용창출기업 ③향토기업 ④복합화물터미널                             |
|        | 기초(34) | ①도시가스 ②고용창출기업 ③향토기업 ④안동문화관광단지<br>⑤폐광진흥지구                 |
| 경<br>남 | 광역(3)  | ①도서지역 ②항만공사 ③고용창출기업                                      |
|        | 기초(2)  | ①초전장재공업지역 ②해제된 GB  |
| 제<br>주 | 광역(11) | ①별장 ②고급주택 ③골프장 ④제주투자진흥지구 ⑤어려운가<br>구집지어주기사업 ⑥서귀포 제2관광단지 등 |

## 시·군세 감면조례 표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00시(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시각장애인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장애인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장애인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감면신청 하는 1대(취득세 및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 신청하는 자동차 1대를 말하며, 해당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여부에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가 매도되지 아니하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를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천재지변·화재·교통사고 등으로 소멸·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4.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제3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하며,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4조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5조 【한센정착농원지원을 위한 감면】 한센정착농원에 거주하는 한센환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는 그 농원 안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것에 한정한다) 및 축사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6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00도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

한다.

**제7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8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 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6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동화사업실천계획 승인을 얻어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업종의 협동화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추진주체 및 참가업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

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후 해당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다만, 총 자산중 민간 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00도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고, 00중소기업종합지원 센타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2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00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면제한다.

제13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같은조제1항제2호의2 내지 제2호의7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 )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같은조제5항은 15년의 범위안에서, 같은조제12항은 10년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로 감면기간과 감면율 조정 가능

제14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공단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공단지에 대체입주 하는 자(휴·폐업된 공장에 대체입주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취득하는 해당 농공단지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각각 ○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00 농공단지
2. 00 농공단지

제15조 【벤처기업 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는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하여 감면여부 결정

제16조 【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2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제1항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후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재산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해제일 또는 폐업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을 추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전액 추징한다.

1.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7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2.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폐업한 경우
3. 부동산 취득후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와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 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에서 정한 조세감면기준에 해당하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이경우 해당 과세연도와 잔존감면기간동안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보 칙

제00조 【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00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00조 【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00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00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시·군세 개별감면조례 표준안

제00조 【충청북도 제천시·충주시·음성군·단양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도시가스사업지원을 위한 감면】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00조 【충청북도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충청북도 00시·군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고용창출기업이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고용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신청일 기준 24개월이전에 이루어진 신규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고용보조금 최초 교부 결정일부터 고용창출 인원이 1년이상 계속 유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감면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천시 공고 제 2010 -

제천시세 감면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8.

제 천 시 장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조례명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3187(2010.10.5) 및 충청북도 세정과-13049(2010.10.5)호에 의거 『11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른 후속 조치.
- 제천시세 감면조례가 2010.12.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하여 개정

### 3. 주요내용

- '11.1.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자치단체가 감면조례를 자율제정 운영하여야 하나,
  - 현행 감면조례의 경우 '10.12.31. 일몰 적용으로 '11년 감면조례 제정\*시 까지 감면 공백 발생

\* '11년부터는 조례 제정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나, 지방세 심의위원회 구성 근거법인 지방세기본법도 '11년 시행으로 사전심의 불가

- 현행 감면조례에 대한 감면 공백 보완조치로 감면기한을 '11.12.31.'까지만 한시적용하고, '12년부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조례를 제정 운영
- 시세 감면조례 37개 조항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15개 조항이 이관되고 17개 조항이 변경되어 시세감면조례 전부개정

#### 4. 의견서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8일 까지 제천시장 (참조 세정과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연락처 641 - 5564, FAX 641 - 5599 담당자 : 엄 복 철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소
- 기타 참고 사항 등

|      |      |              |  |  |  |
|------|------|--------------|--|--|--|
| ★실무관 | 세정팀장 | 세정과장         |  |  |  |
| 엄복철  | 유충열  | 10/29<br>반병렬 |  |  |  |
|      |      |              |  |  |  |

##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결과보고서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안을 공고한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법예고 조례 : 제천시세 감면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공고번호 : 제천시공고 제2010-1104호
3. 공고기간 : 2010. 10. 8. ~ 10. 28.
4. 공고매체 :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입법예고란
5. 공고내용 : 불임
6. 공고결과
  - 조회수 : 40명
  - 의견제시자 : 없음

불임 공고안 1부. 끝.